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1일, 서범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범수의원)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헌행법 제17조제1항¹⁾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⑨ (생략)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초·중·고등사립학교, 사립대학과 그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으로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고 있음.

[취업심사 대상기관 현황 : '24년 24,502개(매년 인사혁신처장 고시)]

구분		지정기준	대상기관	적용대상
영리 분야 (20,147)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17,521개	모든 취업심사 대상자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1,076개	
	법무법인/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60개/75개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8개	
	협회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해당 법인·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포함)	1,243개	
비영리 분야 (1,594)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14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221개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634개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524개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201개	
특정 분야 (2,761)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20.6.4. 이후 퇴직하는
	초·중등 사립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2,536개	

	방위산업분야	방산업체와 최근 3년간 중개수수료(무역거래건당 200\$ 이상)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	54개	취업심사 대상자
	식품·의약품 등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 지정 등의 업무 수행기관	171개	

주: 취업심사대상협회(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 말 관보 고시
자료: 인사혁신처

이는 공직자 등이 재직 중에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특례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특히,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가목에 따른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와 나목에 따른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는 자본금이나 외형거래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범위의 사기업체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 또는 감리를 담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른바 전관 업체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³⁾ “전관 업체 관리·감독 분야”에서 설계 오류를 발견하고도 전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요건 미충족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 사례, 전관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 전관 업체에 설계 공모 당선 기회를 부당하게 추가 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관 등 직무관련자와의 유착·특혜 분야”에서도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상품권) 수수 및 음주운전 미신고 사례, 세르파 파견 근무 중 현장체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 직무 관련 전관 업체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사례, 부실한 예정가격 산정과 부당 수의계약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동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 중 재취업자는 총 1,037명이고, 동 공사와 공사 및 설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158개)에 재취업한 인원은 632명(60.9%), 계약관

3)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실태(국회감사요구·공익감사청구), 2024. 8.

계가 없는 그 밖의 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405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24년 9월 기준 재취업자 632명 중 전관 업체에 재직 중인 현직 인원은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전관 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전관 등 직무 관련자와의 유착·특혜 사례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부실 시공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데 인과관계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건축·건설 분야에 있어 설계 또는 감리가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2호 나목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분야의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에 못지 않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명시하여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 취업 제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종전에 비하여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같은 입법 조치가 기본권 제한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현행 규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만 취업 제한을 받으므로 건설 분야 전반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도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정안과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한국도로공사 및 제주교육청은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쌓아온 기술력, 노하우 등 개인의 역량을 통해 건설 분야 및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 감리업체 전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퇴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특정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등의 범위를 연간 외형거래액 규모에 따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특정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등의 범위를 연간 외형거래액 규모에 따라 한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하고(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1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사기업체”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취업심사대상기관”	-----	-----
이라 한다)에 취업	-----	-----
할 수 없다. 다만,	-----	-----
관할 공직자윤리위	-----	-----
원회로부터 취업심	-----	-----
사대상자가 퇴직	-----	-----
전 5년 동안 소속	-----	-----
하였던 부서 또는	-----	-----
기관의 업무와 취	-----	-----
업심사대상기관 간	-----	-----
에 밀접한 관련성	-----	-----
이 없다는 확인을	-----	-----
받거나 취업승인을	-----	-----
받은 때에는 취업	-----	-----
할 수 있다.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1. ~ 11. (개정안과
	같음)	같음)
12. 다음 각 목의	12. -----	12. -----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사기업체 또	-----	-----
는 법인·단체로	-----	-----
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사기업체	-----	-----
또는 법인·단체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가.·나. (개정안

<u><신 설></u> ② ~ ⑨ (생 략)	같음) <u>다. 건축·건설</u> <u>분야의 설계</u> <u>또는 감리 업</u> <u>무를 수행하는</u> <u>사기업체 또</u> <u>는 법인·단체</u> ②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같음) 다. ----- ----- ----- ----- <u>연간 외형거래액</u> <u>이 일정 규모 이</u> <u>상인 사기업체-</u> ----- ② ~ ⑨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 -- <u>2026년 1월 1일</u> -----.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
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	① -----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	-----
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
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	-----
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
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	-----
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	-----
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	-----
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	-----
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
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	-----
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1. ~ 11. (생 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 ·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나. (생 략) <u><신 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u>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